

직원 1인 이상 제과점 고용보험 의무 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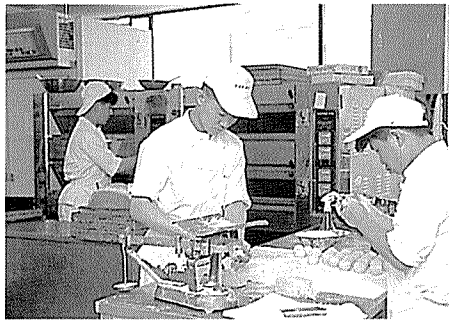
내년 3월까지, 사업주 부담 근로자 임금 총액의 0.7%

지난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과점 운영주 및 기술인들도 99년 3월까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.

올 들어 고용보험제도를 의무 가입사항으로 개정된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10인 이상, 3월부터 5인 이상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지침안을 확정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1인 이상의 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과점들은 내년 3월까지 노동부와 각 지방 사무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. 이 가운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의무 가입해야 할 사항이며, 사업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3개 부문에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.

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연체료 외에 300만원 가량의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. 고용보험 가입시 각 제과점은 근로자 임금 총액에 업종별



보험료율을 곱해 납입금을 결정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 총액의 0.7%, 근로자는 자기 임금의 0.3%를 보험료로 납입하게 된다.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가입이 시행된 98년 10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등 고용보험 가입시 그 동안의 미납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.

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퇴직(이직)한 경우,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60~210일 동안 퇴직(이직) 전 평균 임금의 50%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. 또한 실업 기간 동안 취직에 필요한 일정액의 교육비도 지원해 준다. 사업주에게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휴업(전업)한 뒤에도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, 임금의 2/3~1/2의 훈련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. 이처럼 고용보험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과점들도 내년 3월까지 반드시 가입을 마쳐야 하며,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제과인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.

■ 고용보험 제도 개요

부 문	내 용	납 입 금
실업급여실업	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자기능력개발비	지원사업주 0.3%, 근로자 0.3%
고용안정 사업	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 지원	사업주만 0.3%
직업능력개발 사업	직업훈련,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·근로자에게 소요비용 일부 지원	사업주만 0.1%

■ 지역별 노동부 사무소(고용보험관리과)

지 역	구 분	연 락 처	지 역	구 분	연 락 처
서울·강원	서울청	(02)598-0562-4	인천·경기	경인청	(032)421-4712
	춘천	(0361)241-1912		수원	(0331)245-2449
부산·경남	부산청	(051)851-7403	광주·전라	광주청	(062)227-3114
	울산	(0522)273-2166~7		전주	(0652)245-2081
대구·경북	창원	(0551)289-6602	대전·충청	대전청	(042)480-6225
	대구청	(053)321-6701		청주	(0431)252-6641